

2023년도 제9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3. 5. 4.(목),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신창환(분과위원장), 심장섭 위원, 위정현 위원, 하병현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3-91~92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801건(안전번호 제2023-30730호~31530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3-30730호~30787호는 블로그에 뮤지컬의 무단촬영 영상 등 판매 게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함.

안전번호 제2023-30788호~30801호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 PDF 파일을 판매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함.

안전번호 제2023-30802호~30822호는 방송사업자 등의 복제권, 전송권,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기기를 판매하는 게시물을 전송한 사안으로,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 행위가 저작권 등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 점,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3-30823호~30834호는 웹하드 및 블로그, 카페에서 불법복제물을 제공 중인 사안으로, 합법 시장에서 제공 중인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 중인 바 저작물의 시장 및 가치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함.

안전번호 제2023-30835호~31530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출판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9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3-91회~92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제2023-91회 및 제2023-92회의 각 제1호 안전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내 저작물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 및 기타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A 위원: 저작물명 등은 심의대상 게시물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비식별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참석위원 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에 대해 만장일치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음.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등 심의대상 게시물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을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3. 안전상정

-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제1항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으신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제척됨. 각 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척사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심의시 사유를 밝히고 회피하여 주시기 바람.
 - 참석위원 전원: 해당 없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불법복제물의 질이나 희소성을 고려해서 교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러함. '교환' 거래의 경우 직접 돈을 주고받는 대신 교환비를 정하는 관행이 있음.
- B 위원: 교환 당사자들 모두 불법복제한 영상물을 거래하는 것인가.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러함.
- A 위원: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이 블랙 마켓과 비슷하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파일이 생각보다 질이 나빠도 문제 제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서로 불법복제물을 교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자신도 불법복제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으로 보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3-30730호~30787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검토 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30730호~30787호의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

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3-30788호~30801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출판물을 스캔한 PDF파일을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사안 20건임.

(안전번호 제2023-30789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중고거래 사이트 ◆◆◆◆에서 ▼▼▼▼ ▼▼를 스캔한 PDF파일을 제공하고 있음.

(안전번호 제2023-30796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중고거래 사이트 ■■■■에서 ●● ●●●●●●을 스캔한 PDF파일을 제공하고 있음.

해당 안전번호 제2023-30788호~30801호의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인 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B 위원: 대학 교재 불법복제물의 경우 주로 어디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학교 사이트 등에서도 거래되는지.

- A 위원: 공식적인 학교 사이트보다는 외부의 중고 거래 플랫폼이나, '♡♡♡♡♡'과 같은 앱을 이용하여 거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요즘은 단속을 통해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교내 복사실에서 불법복제물을 판매하는 경우 또한 상당하였음.
- A 위원: 제2023-80회 전체위원회에서 PDF 구매 희망 게시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때, 대학 교재의 PDF 스캔본 거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던 것으로 기억함. 학생들의 이용에 관대한 입장도 제시해 주셨고, 출판업계의 심각한 피해에 주목하는 의견도 있었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3-30788호~30801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검토 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30788호~30801호의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불법복제물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인 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오진해 전문위원: 안전번호 제2023-30802호~30822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 ▲▲▲▲ 등의 쇼핑몰 사이트에서 불법 스트리밍 기기를 판매하고 있는 사안 총 94건

임.

(안전번호 제2023-30817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 셋톱박스를 판매하고 있음. 해당 기기는 실시간 방송 및 VOD를 불법으로 연결하여 재생할 수 있도록 함.

본건 기기는 권리자의 복제권, 전송권,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게시자가 본건 기기를 판매하는 행위는 복제권, 전송권, 동시중계방송권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본 건 판매자는 본 건 기기를 판매하기 위해 심의대상 게시물을 작성하였는바,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 행위가 저작권 등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해당 기기들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심의대상 게시물의 불법 스트리밍 기기를 통해서 중국 내의 TV 방송도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는 것인가.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러할 것으로 보임.
- A 위원: 그렇다면 해당 기기 이용을 통한 1차적 피해자는 중국이 되는데도 기기가 계속 제작되고 판매되는 것인지.
- C 위원: 불법 스트리밍 기기를 통해 중국 국내뿐 아니라 우리나라,

미국, 일본 등 전 세계의 TV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A 위원: 이러한 기기를 통해 중국 콘텐츠도 피해를 입지만 해외 콘텐츠가 입는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인가.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러함. 특히 중국은 해외 콘텐츠의 수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기가 꾸준히 제작·판매되는 것으로 보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3-30802호~30822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검토 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30802호~30822호는 심의대상 게시물들의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 행위가 저작권 등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3-30823호~30834호는 민원인(실명 2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웹하드에 게시된 게임·영상(방송) 불법복제물 총 12건임.
(안전번호 제2023-30834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카페에서 드라마 '★★★★★ ★★★★★'를 제공 중임. 11화~20화 전체를 스트리밍 형태로

제공하고 있음.

해당 안전번호 제2023-30823호~30834호의 12개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이용하고 있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3-30823호~30834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검토 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30823호~30834호의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이용하고 있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

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 제2023-30835호~31530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드라마 '보라! 데보라'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 2023-30899호는 웹하드에서 드라마 '보라! 데보라'의 5화를 판매 중인 사안임. 2023. 4. 12.부터 ENA에서 방영 중인 드라마임.

(드라마 '딜리버리 맨'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 2023-30940호는 웹하드에서 드라마 '딜리버리 맨'을 340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3. 3. 1.부터 2023. 4. 6.까지 ENA에서 방영한 드라마임.

(웹소설 '버려진 나의 최애를 위하여'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3-31522호는 웹하드에서 웹소설 '버려진 나의 최애를 위하여'를 50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1. 3. 3.부터 네이버 시리즈에서 총 129화가 연재된 웹소설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전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3-30835호~31530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전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참석 위원 전원: 안전번호 제2023-30835호~31530호는 모두 불법 복제

한 영상물, 출판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30835호~31530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3-30730호~30787호는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3-30788호~30801호는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3-30802호~30822호는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3-30823호~30834호는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3-30835호~31530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o 신창환 분과위원장이 제9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9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5. 11.

분과위원장 신창환

위원 심장섭

위원 위정현

위원 하병현